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55109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배대혁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금혜연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120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3,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형식적으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후 임의로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매수인인 원고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및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